종 법(宗法)

포교원법(布敎院法)

제1조 종헌 제75조에 의하여 종단 포교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포교원을 둔다.

제2조 포교원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단체 및 사찰의 포교지도에 관한 사항
2. 포교자료 및 포교기술에 관한 사항

제3조 포교원에는 포교부 교화부 포교국을 둔다.

제4조 포교원에는 포교원장 부원장 포교부장 교화부장을 둔다.

제5조 포교원의 간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포교원장은 포교원을 대표하고 종단 포교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포교부장은 법사 단장으로서 각급 법회(종단내의 법회)를 인도하고 설법을 담당한다.
4. 포교부장은 포교에 관한(문서포교) 분야를 담당한다.

제6조 포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지도위원은 포교사업을 지도하고 운영위원은 포교운영을 후원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포교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7조 포교원은 다음의 보고서를 연말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3. 인사관계

제8조 운영에 대한 세칙은 종규로 정한다.

제9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